

「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1. 개정이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법률 제20033호, 2024. 1. 16. 제정, 2025. 1. 17. 시행)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유치 대상(수혜 대상)의 기준을 확립하고, 우수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라는 제도 본연 목적 달성을 위한 거주기간, 해외경력요건 등 행정 기준을 구체화하여 우수 해외인재 유치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내 거주기간, 해외경력요건 등 우수 해외인재 기준 구체화

나. 우수 해외인재 인정 유형 신설

- (현행) 연봉, 학력, 경력 등 정량자격 요건 만족여부에 따른 인정
- (개정) 정성평가 기반 우수 해외인재 인정 유형 및 정부 인재유치사업

연계 인정 유형 신설하여 산업 현장 실질적 수요 인재로 수혜 대상 확대
다. 제도 연계 비자 발급기관인 법무부 기준 고시와 동일하게 학력 요건 확대

3. 붙임

가. 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 신규대조표

나. 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다.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7. 1.(수)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
통상부 산업일자리혁신과 장재명 사무관 앞
- 전화 : 044-203-4227
- 팩스 : 044-203-4722
- 이메일 : woaud132@korea.kr